#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9 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:김도읍 · 권명호 · 윤한홍

金炳旭・조수진・이 용

유상범 • 태영호 • 강기윤

김성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.

그러나,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%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. 특히 지구대·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,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3항"로 한다.

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의료지원) ①・② (생 략)	제8조(의료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
	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검사
	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	<u>④</u> 제1항 및 제3항
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·시기·	
주기, 진료의 대상·방법·절차,	
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	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
한다.	